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0. 17.)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한 기 주)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 · 2007. 6. 29. 시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법관 · 교육자 ·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안 제2조제 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함.(안 제2조제2항)
- 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결정함.(안 제3조)
-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안 제7조)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안 전부개정 사유는?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위원회의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7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출년월일 : 2008. 10.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 · 2007. 6. 29. 시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법관·교육자·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안 제2조제1항)
-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함.(안 제2조제2항)
- 다. 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결정함.(안 제3조)
- 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5조)
- 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사.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안 제7조)
- 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 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안 제9조)

□ **첨 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법관·교육자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
2.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부천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것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3. 09. 10 조례 제1241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19호

개정 2006. 05. 11 조례 제21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부천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천시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부천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1.1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993.09.1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